의안 번호	118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10.27.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6.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가.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문화시설로써

나. 민간위탁 기간이('22. 1. 1. ~ '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관리위탁 등)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공공성)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청소년활동 활성화 촉진을 통한 공공성 확보 가능
- (효율성) 민간위탁 운영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용이하고 법인 전입금,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질 향상
- (전문성)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및 운영관련 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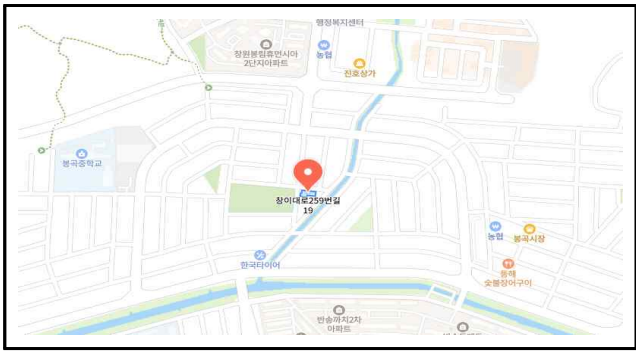
- 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및 창의성개발 함양
-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생활체육사업 등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등

라. 민간위탁 시설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자	시설장	시설규모		종사자	주요시설
				연면적	수용정원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의창구 창이대로 259번길 19 (봉곡동)	(재)한가람문화재단	장보라	716.93㎡	120명	6명	유스카페, 공연·노래 연습실 문화관람·창작실, 강의실 등

○ 위치도 및 전경사진





마. 위탁기간 : 5년('27. 1. 1. ~ '31. 12. 31.)

바. 위 탁 금 : 180,201천원(2026년 기준)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선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함

자. 성과평가 결과(☞성과점검)

◎ **성과평가 항목 제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6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2026년 성과평가 결과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 94점 (100점 만점)**

4.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1]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율활동 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3],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4]에서는 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5]에서는 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이 조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

2)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5)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관리위탁 등)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 또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6]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180,201천원 중 인건비가 155,818천 원으로 약 86.5%를 차지하는 반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13,750천 원으로 약 7.6%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사자 인력 운영의 적정성과 함께 사업비 규모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7]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필요성은 인정됨.

<2026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구분	평가결과	운영관리(40)				사업성과(50)					사후관리(10)
		인력 (15점)	예산 (10점)	사업활동 (10점)	안전/시설 (5점)	청소년 역량 강화 (15점)	청소년 보호 사업 (10점)	청소년 복지 사업 (10점)	동아리 및 프로그램 (10점)	교류 및 협력 (5점)	이용자 만족도 및 피드백 (10점)
점수	94	15	8	8	5	15	8	10	10	5	10

6)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관리위탁 등) ⑦ **제1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와 책임성・공신력・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 및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지표 등을 토대로 성과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 고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9개소)**

시설명	설치년월	운영유형	운영자 (대표자)	소재지	시설(㎡)	
					대지	건물
봉림청소년문화의집	03.2.28.	위탁	(재)한가람문화재단 (이재웅)	의창구 창이대로 259번길 19	1,167	716
마산청소년문화의집	93.3.18.	위탁	마산YMCA (신삼호)	마산합포구 문화남7길 12	417	810
진해청소년문화의집	00.2.9.	위탁	(재)반석청소년재단 (백남국)	진해구 웅천중로59	1,117	416
늘푸른전당	97.4.12.	위탁	창원시설공단	성산구 두대로 97	31,780	11,957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08.5.8.	위탁	창원시설공단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29,908	14,413
봉림청소년수련관	14.8.22.	위탁	(사)봉림 (이숭구)	의창구 봉곡로93번길 39-2	1,373	2,119
진해청소년수련관	01.8.1.	위탁	(재)반석청소년재단 (백남국)	진해구 진해대로 1101	17,532	2,764
진해청소년전당	13.9.11.	위탁	(재)한가람문화재단 (이재웅)	진해구 중원로 33	3,303	4,871
진해청소년야영장	06.8.1.	위탁	창원시설공단	진해구 천자로 484	192,474	1,902